



# 환경부



수신 한국환경공단, (사)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, 한국유탄유공업협회, (사)한국  
농수산물재활용사업공제조합,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유관 단체

(경유)

제목 「포장재 재질·구조 평가 의무화」 등 제도 시행 및 교육 안내

---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2019년 12월 25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[시행  
2019. 12. 25] [법률 제16083호, 2018. 12. 24, 일부개정]에 따라, 포장재 재질  
·구조 평가 의무화 등이 시행 될 예정입니다.

※ 법률 주요 개정내용 및 제도 안내문 붙임 1 참조

3. 이에 따라, 제도 대상자 및 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아래와  
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, 붙임2의 설명회 개최 안내문을 참조하셔서 희망하는  
날짜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교육기간 : '19.11.13~12.3 (21일간)

나. 교육장소 : 서울 등 8개 지역 (총 9회)

다. 참석대상 :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 약 8천여개소 및 유관단체 등

다. 주요내용 : 자원재활용법 주요 개정내용 안내 및 질의응답

라. 신청방법 : 설명회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제출 (02-6948-8787~8)

4. 또한, 제도 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「포장재 재질·구조 평가제도의 이해」  
가이드라인을 제작·배포하오니 아래의 주소에서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시기 바랍  
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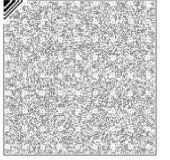
※ 한국환경공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홈페이지([www.iepr.or.kr](http://www.iepr.or.kr)) - [고객마당 >  
공지사항]

(사)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홈페이지([www.pkg.or.kr](http://www.pkg.or.kr)) - [공지사항]

5. 아울러,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유관단체에서는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포장  
재 재질·구조 평가 의무화 등 제도 시행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  
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개정 자원재활용법 주요 내용 및 제도 안내 1부.

2.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1부. 끝



환 경 부 장 관



---

★행정사무관 <sup>대결 2019. 11. 5.</sup>  
유용호

협조자

시행 자원재활용과-3453 (2019. 11. 5.) 접수

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/ <http://me.go.kr>

전화번호 팩스번호 - / [theacme@me.go.kr](mailto:theacme@me.go.kr) / 대국민 공개